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1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2. 제안일자 및 상정일자

○ 제안일자 : 2007년 3월 19일

○ 상정일자 : 제258회 임시회

2007년 3월 19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3. 제안이유

- 다양화된 행정업무에 대해 소관 위원회가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 및 의안심사와 관련한 자문위원을 증원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자문위원 증원

- 전문가 위촉인원 범위를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조정
(안 제12조의2제1항)

5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인 위원회 활동 및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자문위원으로 전문가를 2인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3인 이내로 증원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